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09

발의연월일: 2020. 7. 31.

발 의 자:김정호·박재호·윤후덕

서동용 · 허종식 · 김경협

임종성 · 강병원 · 신현영

심상정 · 김병욱 · 신정훈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용물질 및 유기농어업자재의 경우 천연에서 유래하고, 퇴비화, 발효 등 생물학적·물리적 방법으로 선정·제조되어 해당물질로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 등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어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유기농어업자재 등은 농약만큼 엄격한 기준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이러한 허용물질과 유기농어업자재 보조제에 대하여 적용예외로 하지 않아 관련 산업의 소규모·영세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따라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허용물질 및 사용가능조건에 제시된 화학 물질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공시 유기농어업자재를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에서 적용을 제외하여 소규모 영세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3조제14호 신설).

법률 제 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허용물질 및 사용가능조건에 제시된 화학물질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공시 유기농어업자재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제3조(적용범위)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u><신 설></u>	1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
	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
	른 허용물질 및 사용가능조
	건에 제시된 화학물질과 같
	은 법 제37조에 따른 공시
	<u>유기농어업자재</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